

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

제	정	2011.12.28	지침	제265호
개	정	2012. 4.27	지침	제284호
개	정	2013. 5. 3	지침	제328호
개	정	2013. 9.16	지침	제350호
개	정	2014. 2.28	지침	제377호
개	정	2014. 3.20	지침	제381호
개	정	2015. 4.13	지침	제442호
개	정	2015. 8. 7	지침	제461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 제8조의2, 「코스닥시장 업무규정」 제7조의3, 「코넥스시장 업무규정」 제9조, 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」 제8조의2 및 「KRX금시장 운영규정」 제11조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9.16, 2014.3.20>

제2조(정의) ① 이 기준에서 “회원”이란 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) 「회원관리규정」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「KRX금시장 운영규정」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을 말한다.<개정 2014.3.20>

② 이 기준에서 “거래소시스템”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, 파생상품시장 및 KRX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<개정 2013.9.16, 2014.3.20>

③ 이 기준에서 “회원시스템”이란 회원이 주문의 접수, 호가의 점검 및 제출 등을 위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하

는 시스템을 말한다.

④ 이 기준에서 “증권시장”이란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을 말한다.<개정 2013.5.3, 2013.9.16>

⑤ 이 기준에서 “KRX금시장”이란 「KRX금시장 운영규정」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.<신설 2014.3.20>

⑥ 이 기준에서 “통신회선”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송·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한다.<개정 2014.2.28>

⑦ 이 기준에서 “회원전산센터”란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원의 라우터, 스위치,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. 다만, 거래소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일부 투자자의 주문 접수·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시스템은 제외한다.<개정 2013.5.3>

⑧ 이 기준에서 “기간통신사업자”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⑨ 이 기준에서 “거래소역내”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및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말한다.

⑩ 이 기준에서 “세션”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송·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14.2.28>

1. 전용세션

회원이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는 세션

2. 공용세션

전용세션을 제외한 모든 세션

⑪ 이 기준에서 “회원대외계시스템(FEP)”이란 회원과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

매에 관한 주문이나 매매계약체결내용 및 시세정보를 송·수신하는 회원의 통신제어시스템(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<개정 2014.2.28>

⑫ 이 기준에서 “호가제출시간”이란 호가가 회원대외계시스템(FEP)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, 파생상품시장(코스피200선물의 글로벌거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및 KRX금시장에 적용한다.<개정 2013.9.16, 2014.3.20>

제2장 회원과 거래소 간의 시스템 연결 등

제4조(회원전산센터의 수) ① 회원은 회원전산센터를 최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시장에 접속하기 위하여 부산에 회원전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회원은 회원전산센터를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통신회선의 배정기준<개정 2012.4.27>)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메인 2회선과 백업 1회선의 통신회선을 회원에게 배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통신회선을 추가배정할 수 있다. 다만, 거래소시스템과 회원시스템간의 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소가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.<개정 2012.4.27, 2015.8.7>

1. 증권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

가. 메인 : 5회선

나. 백업 : 5회선

다. 재해복구 : 5회선

2.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

가. 메인 : 5회선

나. 백업 : 5회선

다. 재해복구 : 5회선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.<신설 2012.4.27, 2015.4.13>

1. 증권시장의 경우 12M

2.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12M

④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원전산센터를 설치한 회원은 각 회원전산센터에 연결된 각 통신회선의 용량이 동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4.27>

⑤ 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 통신회선의 최대 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원에게 통지한다.

제6조(통신회선의 신청) ① 회원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통신회선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 통신회선의 추가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2.4.27>

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신회선 변경일 전 10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한다.

③ 회원의 합병·분할·이전 등으로 인하여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의 통신회선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5.8.7>

제7조(네트워크의 연결) ① 회원은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하는 회원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네트워크

크 변경일 전 10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하고,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회원이 시세제공만을 위한 네트워크를 신규,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회원은 호가를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원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을 연결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 역내의 통신회선설비를 경유하여야 한다.

③ 회원전산센터 및 호가를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원시스템은 거래소역내에 설치할 수 없다.

제8조(세션의 배정 및 신청<개정 2014.2.28>) ① 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최대 세션의 개수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.<개정 2014.2.28, 2014.3.20>

② 회원은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세션 변경일 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세션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원은 전용세션과 공용세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28>

③ 거래소는 거래소시스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28>

④ 회원의 합병·분할로 인하여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의 세션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4.2.28>

제3장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

제9조(보안장치의 요건) ①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제82조제2항, 「코스닥시장 업무규정」제39조제2항, 「코넥스시장 업무규정」 제57조제2항, 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」제118조제2항 및 「KRX금시

장 운영규정」제104조제2항의 보안장치란 금융감독원의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.<개정 2013.5.3, 2013.9.16, 2014.3.20>

② 회원은 제1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회원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고 침입차단기능을 전용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5.3>

③ 회원은 제1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5.3>

제10조(세션 운영원칙<개정 2014.2.28>) 회원은 공용세션 이용자가 전용세션 이용자보다 호가제출시간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지 않도록 세션을 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28>

제11조(세션의 운영<개정 2014.2.28>) ① 회원은 전용세션의 배정 전 해당 위탁자가 전용세션 이용에 적합한 위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용세션을 배정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세션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세션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해당 위탁자에 대해 전용세션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세션을 재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4.2.28>

③ 거래소는 매일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회원의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.<개정 2014.2.28>

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제10조의 세션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. 다만,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회원시스템의 지리적 위치,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4.2.28>

⑤ 회원은 전용세션 및 공용세션의 관리기록, 세션별 호가제출시간

차이에 따른 조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28>

제12조(세션 운영기준<개정 2014.2.28>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「세션 운영기준」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션을 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28>

1. 제10조에 따른 세션 운영원칙
 2. 제11조에 따른 세션 운영에 관한 사항
 3. 「세션 운영기준」의 관리를 위한 회원 내 담당조직, 업무처리 절차
 4. 그밖에 「세션 운영기준」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회원은 제1항의 「세션 운영기준」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행일 전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3조(시스템의 관리) ① 회원은 회원시스템을 직접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2조에 따라 회원이 제3자(다만, 위탁자는 제외한다)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·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관리·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

② 회원과 거래소는 호가제출시간을 측정하는 각 시점이 1000분의1초까지 구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자료제출 요구 등)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(KRX금시장에서의 시스템 연결 등) KRX금시장에서의 시스템

연결 등은 증권시장에 배정된 통신회선 및 세션 등을 이용한다.
[본조신설 2014.3.20]

부칙 <제265호, 2011.12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2년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7조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원사 네트워크 연결기준 폐지) 「회원사 네트워크 연결기준」(제정 2009.12.31 지침 제181호)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제3조(회원사 네트워크 연결기준 폐지 관련 경과조치)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「회원사 네트워크 연결기준」에 따라 행하여진 네트워크의 연결은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84호, 2012.4.27>

이 기준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8호, 2013.5.3>

이 기준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0호, 2013.9.16>

이 기준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7호, 2014.2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전에 종전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「프로세스 운영기준」을 거래소에 통지한 회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「세션 운영기준」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81호, 2014.3.20>

이 기준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2호, 2015.4.13>

이 기준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1호, 2015.8.7>

이 기준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 개정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통신회선 변경 신청서

통신회선 변경 신청서

구 분	신청내역	비 고
회 원 명		
신청내용		
대 역 폭		
설치장소		
테스트일(예정)		
가 동 일(예정)		
연 락 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당자명 : (인) • 소속부서 : • 전화번호 : • E-mail : 	

신청일 : 년 월 일

한국거래소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 네트워크 변경 신청서

네트워크 변경 신청서			
신청구분	신규/추가/삭제		
회원명			
신청일		변경일	
연락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당자명 : (인) • 소속부서 : • 전화번호 : • E-mail : 		
신청내용			
첨부	네트워크 구성도, 시스템 위치, 시스템 기능 등 (현재와 신청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출)		

[별지 제3호 서식] 세션 변경 신청서 <개정 2014.2.28>

세션 변경 신청서			
신청구분	신규/추가/삭제		
회원명			
신청일		변경일	
연락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당자명 : (인) • 소속부서 : • 전화번호 : • E-mail : 		
신청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용세션 및 공용세션의 구분 : (전용 ↔ 공용간 구분의 변경 포함) • 신청 세션의 수 : 		
비고			